감사결과 처분 사항

□ 감사결과 처분사항: 21건(주의 12건, 시정 9건)

연번	적출 내용	처분 요구			
		행정상	재정상		
			조치 방법	건수	금액 (천원)
1	☐ 노인복지기금 사업 정산검사 소홀 ○ 2017년 노인복지기금 정산 검사 소홀: 3건, 6,024천원	주의			
2	☐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운영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2017~2018년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운영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13건, 2,030천원	주의			
3	☐ 영등포000클럽 운영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2017년, 2019년 영등포000클럽 운영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7건, 3,924천원	주의			
4	☐ 노인복지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환 미조치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퇴직적립금 미반납: 2건 1,021천원	시정	환수	2	1,021
5	☐ 연가보상비 지급 소홀 ○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 연가일수 1일 가산으로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1건 43천원	시정	환수	1	43
6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 계획 미 수립 ○ 2017년, 2019년 계획 미수립: 2건	주의			
7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수혜자 선정 부적정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대상 연령 미도달자에게 급식 제공: 7명	주의			
8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망자 제공 부적정 ○ 사망자 무료급식 제공에 대한 정산검사 소홀: 10회 35천원	시정	환수	10	35
9	☐ 민간위·수탁계약서 상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누락 ○ 민간위수탁계약서에 개인정보보호 처리제한 사항 명시 누락: 8개 시설	시정	해당 사항 명시		

연번	적출 내용	처분 요구			
		행정상	재정상		
			조치 방법	건수	금액 (천원)
10	☐ 종사자 임면 및 입소자 입·퇴소 보고 사항 관리 소홀 ○ 종사자 임면 및 시설 입소자 입·퇴소 지연보고: 종사자 임면 20건, 입소자 입·퇴소 55건	주의			
11	☐ 기초연금 환수대상자 체납처분 미이행 ○ 2017년 1월~ 2019년 8월: 44명, 19,488천원	시정	환수	44	19,488
12	☐ 사망·중지대상자에게 기초연금 지급 부적정 ○ 사망 등의 기초연금 지급 중지자에게 기초연금 지급: 3건, 618천원	시정	환수	3	618
13	☐ 기초연금 과소지급 ○ 기초연금 지급 시 신청일자가 아닌 책정일자 기준으로 기초연금 과소 지급: 1건 120천원	시정	환급	1	120
14	☐ 기초연금 연간조사계획 미수립 ○ 2017년, 2018년 기초연금 연간조사계획 미수립	주의			
15	☐ 보장시설수급자 시설생계급여 정산업무 소홀 ○ 2017년~2019년 시설생계급여 지연보고 및 누락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정산서 접수 소홀	주의			
16	☐ 보장시설수급자 시설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시 지급기준을 보장시설의 수급자 현원이 아닌 총정원으로 착오 적용: 53건, 5,926천원	시정	환급	53	5,926
17	☐ 보장시설수급자 특별위로금 반납 부적정 ○ 특별위로급 반납사유가 없음에도 반납 조치: 5건, 179천원	주의			
18	☐ 보장시설수급자 시설생계비 입원공제 부적정 ○ 일반수급자로 장기입원으로 인한 공제금액을 시설생계급여에서 부적정 차감: 16건 1,601천원	시정	환급	16	1,601
19	☐ 보장시설수급자 월동대책비 사용 부적정 ○ 월동대책비 지급 목적외 사용: 807천원	주의			
20	☐ 공사계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4건, 203,000천원	주의			
21	☐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부적정 계약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건설공사 발주시 관련 업종 미등록 업체와 계약: 3건, 79,650천원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No.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28.	주의	-	-	-	-

제 목	노인복지기금 사업 정산검사 소홀

【 지적내용 】

○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거하여 영등포구 거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통해 백세시대에 부응하는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통하여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2017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현황 】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교 부 액 (천원)	집 행 액 (천원)
1	대한노인회영등포구지회	경로당 특성화 다기능 혁신사업	18,254	18,254
2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노인상담사와 함께하는 행복더하기 사업	8,212	8,212
3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생생배움터	3,650	3,600
4	신길종합 사회복지관	노인전문자원봉사단 '무지개봉사단' 육성 및 노인건강교실	3,600	3,598
5	구립영등포 노인복지센터	탱글탱글 보습 UP프로젝트	3,860	3,860
			37,576	37,5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실적보고), 제24조(정산검사)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2017년 노인복지기금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금집행에 따른 정산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했으나 아래와 같이 보조금 정산 시 지출적격증빙서류 누락, 강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등 정산자료가 미흡하거나 부적정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산 처리하는 등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노인복지기금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내용】

집행일자	사업단체 및 사업명	적요	금액 (천원)	지적사항
2017-06-01	-	수지침 재료 구입비 (4월~6월 상반기)	432	- 적격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누락
2017-06-13	-	수지침 재료 구입비 (7월~9월 하반기)	432	- 적격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누락
2017년 (사업기간)	-	노래교실 외 5개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5,160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료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보조금 정산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추후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28.	주의	-	-	-	-

제 목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운영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지적내용 】

○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의거하여 어르신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운영보조금 지원 현황 】

구분	17년 지원액 (천원)	18년 지원액 (천원)	19년 지원액 (천원)
사무국장 인건비	38,558	37,345	33,258
사무실 운영비	14,400	14,400	32,159
합계	52,958	51,745	65,4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실적보고), 제24조(정산검사)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2017년~2018년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에 운영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금집행에 따른 정산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했으나, 아래와 같이 보조금 정산 시 퇴직적립금을 사무국장 개인계좌 입금, 지출 적격증빙서류 누락, 개인카드 사용 후 보조금으로 사후 정산 등 정산자료가 미흡하거나 부적정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산 처리하는 등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운영보조금에 대한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운영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항】

지출일자	건명	금액(원)	지적사항
2017-01-31	2017년 사무국장 퇴직적립금 1월	232,160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특별회계에 적립하지 않고 사무국장 개인계좌로 지급
2017-02-27	2017년 사무국장 퇴직적립금 2월	232,160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특별회계에 적립하지 않고 사무국장 개인계좌로 지급
2017-03-24	2017년 사무국장 퇴직적립금 3월	232,160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특별회계에 적립하지 않고 사무국장 개인계좌로 지급
2017-06-05	지회업무차량 역사 탐방시 주차료	15,000	개인카드 사용 후 보조금으로 사후 정산
2017-10-31	설탕 및 생강차 구입	15,750	개인포인트 적립
2017-11-13	경로당 지도자 워크샵 관련 주차위반 범칙금 납부	200,000	보조금으로 주차위반 범칙금 납부
2017-12-13	2017년 연하장 구입	346,500	지출 적격증빙서류 누락(전자세금계산서 누락)
2017-12-18	브라더 프린터기 A/S비용	187,000	지출 적격증빙서류 누락(전자세금계산서 누락)
2017-12-20	지회장실 임원용의자교체	264,000	지출 적격증빙서류 누락(전자세금계산서 누락)
2017-12-20	커피잔세트	125,000	개인포인트 적립
2018-07-13	지회업무용차량주차료	7,800	개인카드 사용 후 보조금으로 사후 정산 (개인카드 증빙서류 부존재)
2018-07-23	지회 출입문 자동키 구입	170,000	지출 적격증빙서류 누락(전자세금계산서 누락) 및 정당채주가 아닌 직원계좌로 대금지급
2018-10-23	지회 업무용차량 주차료	3,100	개인현금사용 보조금으로 사후정산
합 계		2,030,630	

【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보조금 정산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추후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28.	주의	-	-	-	-

제 목	영등포000클럽 운영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지적내용 】

○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2017년 하반기 어르신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인 영등포000클럽을 설치하고 사단법인 실업자종합지원서울센터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다.

【 영등포000클럽 운영보조금 지원 현황 】

구분	17년 지원액 (천원)	18년 지원액 (천원)	19년 지원액 (천원)
구비	101,000	155,000	165,558
시비	101,000	155,000	165,558
합계	202,000	310,000	331,1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실적보고), 제24조(정산검사)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2017년~2019년 영등포000클럽 운영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금집행에 따른 정산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했으나, 아래와 같이 보조금 정산 시 지출 적격증빙서류 누락,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 과태료 납부 등 정산자료가 미흡하거나 부적정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산 처리하는 등 영등포000클럽 운영보조금에 대한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영등포000클럽 운영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항**

집행일자	사업단체	적요	금액(천원)	지적사항
2017-12-08		파티션 홀더	93	- 적격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누락
2019-02-13		이전 계량기 설치	1,300	- 적격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누락
2019-02-20		기관 싸인물 제작	154	- 적격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누락
2019-04-05		이전 관련 사무용품 구매	1,269	- 적격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누락
2019-06-19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 수수료 지급	900	- 적격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누락
2019-06-05		직원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지출	160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2019-02-14		차량등록증 주소 변경 수수료	48	- 법인차량 주소 변경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3건
합 계			3,924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보조금 정산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추후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28.	시정	환수	1,021	-	-

제 목	노인복지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환 미조치

【 지적내용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인건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으로 적립된 보조금을 우리 구에 반납토록 조치하여야 했으나, 퇴직적립금 총 2건, 0000,000원에 대하여 별도의 반환 조치 없이 보조금 정산 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

□ 퇴직적립금 미반환 내역

연번	시설명	성명	채용일	퇴직일	면직보고일	퇴직적립급
1	********복지관	000	2018.10.15.	2018.12.31.	2019.1.2.	407,429원
2	******클럽	$$$	2017.9.25.	2017.12.31	2018.1.3.	613,820원
합 계						1,021,249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미반환된 퇴직적립금 000000원에 대하여 반납조치하고, 추후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 후 그 증빙자료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28.	시정	환수	43	-	-

제 목	연가보상비 지급 소홀

【 지적내용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은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 지급의 근거 및 연가가산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가 각각 1일을 가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어르신복지과에서는 2018년 연가보상비를 산정하면서, 2017.1.16. 임용된 행정9급 ***은 2017년도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2018년도에 연가가산을 할 수 없음에도 1일을 가산하여 1일분 43,12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를 환수하고, 추후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 후 그 증빙자료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28.	주의	-	-	-	-

제 목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 계획 미 수립

【 지적내용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②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③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④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했으나, 2017년도 시행 계획을 미 수립 및 2019년도 시행 계획 또한 감사일 현재까지 미 수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매년 노인학대 예방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 후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28.	주의	-	-	-	-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수혜자 선정 부적정

【 지적내용 】

○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19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 운영 계획」〔시 인생이모작지원과-329(2019.1.10.호)〕에 따라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등 9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기관에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 동 계획서 상 지원기준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으로 경로식당은 만 60세 이상, 식사·밑반찬배달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제공토록 수행기관에 지도해야 했으나,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대상자 명부를 확인한 결과 감사일 기준으로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 7명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수혜자 선정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수혜자 부적정 명단

연번	수혜자명	생년	현재 만나이	서비스 개시일	급식소	구분
1		68	51	2012.07.	****복지재단	경로식당
2		71	48	2015.12.	***교회	경로식당
3		69	50	2015.07.	***교회	경로식당
4		55	64	2017.01.	********복지관	비경로식당
5		56	63	2019.06.	********복지관	비경로식당
6		61	58	2019.01.	********복지관	비경로식당
7		55	64	2019.05.	********복지관	비경로식당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수혜자 선정 시 서울시 기준에 맞게 선정하고, 추후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 후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28.	시정	환수	35	-	-

제 목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망자 제공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시에서는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9년 1월 16일「2019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 운영 계획」〔시 인생이모작지원과-329(2019.1.10.호)〕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고 시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 동 계획에 의하면 자치구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현황, 급식운영 관리, 대상자 적정 여부 등을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르신 무료급식 대상자 중복여부 등을 수시 점검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3조(실적보고), 제24조(정산검사)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급식 대상자 명부를 파악하여 중복수혜자 등 대상자의 적정성을 수시점검하고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했으나, ***교회에서 제출한 2분기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 정산 보고서의 급식 명부를 보면 2019년 5월 17일 사망한

어르신(&&&)에 대하여 사망일자 이후에도 급식을 수령한 것으로 표기되어 총 10회, 35,000원(급식단가: 3,5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하여 급식 수혜자 관리 및 보조금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교회에 부정 지급된 급식비 35,000원에 대하여 반납조치하고, 추후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 후 그 증빙자료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28.	시정	-	-	-	-

제 목	민간위·수탁계약서 상 필수 명시 사항 누락

【 지적내용 】

○ 보건복지부 지침「2019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Ⅱ.노인돌봄기본서비스 3. 사업추진체계 나. 사업수행기관별 역할 및 기능을 보면「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등을 위·수탁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감사결과 어르신복지과와 **********케어센터, **********센터 등 8개 시설에서는 민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서 상에 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연번	시 설 명	위탁계약일	개인정보 위·수탁 처리에 관한 사항 계약서상 명시 여부	비고
1	******센터	2014.4.1.	미명시	
2	*******센터 병설데이케어센터	2015.9.15.	미명시	
3	**데이케어센터	2019.4.1.	미명시	
4	******복지관 병설데이케어센터	2015.4.1.	미명시	
5	**데이케어센터	2016.8.9.	미명시	
6	*********데이케어센터	2014.12.1.	미명시	
7	****동데이케어센터	2018.2.2.	미명시	
8	****동데이케어센터	2018.2.2.	미명시	

【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위·수탁계약서에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조치하고, 추후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 후 그 증빙자료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1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28.	주의	-	-	-	-
제 목	종사자 임면 및 입소자 입·퇴소 보고 사항 관리 소홀					

【 지적내용 】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의 임면 및 입소자의 입·퇴소 사항 발생 즉시 온라인으로 구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에 의하면 영등포노인케어센터 등 데이케어센터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인력 등의 변경사항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임면 및 입소자의 입·퇴소 보고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복지관, *****센터 등 7개 시설에서 종사자 임면 20건, 입소자 입·퇴소 사항 55건에 대해 최대 9개월 지연 보고하였음에도 감사일현재까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임면 및 입소자의 입·퇴소 보고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추후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28.	시정	환수	19,488	-	-

제 목	기초연금 환수대상자 체납처분 미이행

【 지적내용 】

○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및 제20조(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및 보건복지부 지침 「기초연금 사업안내」 Ⅱ. 기초연금 급여액의 환수결정에 의하면 부당이득의 범위는 수급자의 허위 ·지연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지급되어야 할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되었거나, 수급권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이 확인된 경우 사유발생일 등을 확인하여 수급권 상실처리 또는 정지하고 부당이득 환수 결정 즉시 “행복 e음” 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납부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고지하여야 하고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기경과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2017년 1월 ~ 2019년 8월까지 44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19,488,940원을 환수금 징수절차에 따라 환수금의 납입고지 및 납부독촉에도 반납하지 않은 환수대상자에 대해 체납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초연금 과지급분에 대한 환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세부내역별첨)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부당 지급된 기초연금에 대하여 환수금 징수절차에 따라 체납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추후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 후 그 증빙자료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1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	시정	환수	618	-	-
제 목	사망·중지대상자에게 기초연금 지급 부적정					

【 지적내용 】

○ 「기초연금법」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시기),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및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에 의하면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기초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변동사항(사망, 교정시설 입소, 국적상실, 선정기준액 초과, 해외체류 60일 이상 등)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수급권이 없음에도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 등의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중지사유가 발생하여 수급권이 없는 3명의 대상자에게 618,850원의 기초연금을 착오지급 하고도 환수대상자로 관리하지 않는 등 기초연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중지대상자에게 기초연금 착오지급 내역 】

연번	성명	생년월일	중지사유	중지일자	착오지급월	착오지급액
1	00	00-00-00	출입국만료보장정지대상	2017.1	2017.02	204,010
2	000	00-00-00	소득인정액초과	2017.3	2017.4	164,840
3	000	00-00-00	사망	2018.10.	2018.11	250,000
함 계						618,850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착오 지급 된 기초연금에 대하여 환수조치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추후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 후 그 증빙자료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1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28.	시정	환급	120	-	-

제 목	기초연금 과소지급

【 지적내용 】

○ 「기초연금법」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시기)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시 신청일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책정일자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1건 120,000원을 과소 지급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기초연금 과소지급 내역 】

성명	생년월일	신청일자	책정일자	과소지급 월	과소지급액
000	00-00-00	2017.12.19	2018.01.24	2017.12	120,000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과소 지급 된 기초연금에 대하여 환급 조치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추후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 후 그 증빙자료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1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28.	주의	-	-	-	-

제 목	기초연금 연간조사계획 미수립

【 지적내용 】

○ 「기초연금법」 제11조(조사·질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등), 보건복지부 지침 「기초연금사업안내」 Ⅱ.조사의 개요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반영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시·군·구청장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조사범위 할당 등 연간조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연금 부정 수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초연금 재정의 효율적 집행 및 안정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여야 했으나, 2017년 ~ 2018년 기초연금 연간조사계획을 미수립 하여 기초연금 확인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추후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1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28.	주의	-	-	-	-

제 목	보장시설수급자 시설생계급여 정산업무 소홀

【 지적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Ⅵ.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에 의하면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급여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시설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생계급여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기한 내 정산보고가 이루어지는지와 제출된 정산서의 집행내역 적정여부 및 증빙서류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7년 ~ 2019년 8월까지 전월의 시설생계비 집행실적이 최대 3개월까지 다수 지연보고 또는 누락되거나, 보장시설에서 적기에 정산 보고하였음에도 정산서의 집행내역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접수 처리를 2개월 이상 지연처리 하였으며, 2017년~2018년에는 전년도 생계급여 집행에 대한 정산 보고를 미실시 하는 등 보장시설수급자 시설생계급여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보장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추후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1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28.	시정	환급	5,926	-	-

제 목	보장시설수급자 시설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 지적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 34조(보장시설 장의 의무) 및 보건복지부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Ⅵ.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에 의하면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의류·신발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보장기관장은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급여기준”에 따라 보장시설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때 지급 기준은 보장시설의 총정원이나 총현원이 아닌 수급자 현원이며 보장시설장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주·부식비 등 구분 없이 집행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수급자 현원에 따른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에 맞게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2017년 1월 ~ 2019년 9월까지 수급자 현원이 아닌 보장시설 총정원의 지급기준으로 53건, 5,926천원의 시설생계비를 착오 지급하는 등 시설생계급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보장시설수급자 시설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내역 】

시설명	연도별 과소지급액 (원)			소계
	2017	2018	2019	
********* ********요양원	2,314,040	2,400,190	-	4,714,230
********노인케어센터	346,850	239,520	626,070	1,212,440
합계				5,926,670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과소 지급 된 시설생계비에 대하여 추가 환급 조치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추후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 후 그 증빙자료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1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28.	주의	-	-	-	-
제 목	보장시설수급자 특별위로금 반납 부적정					

【 지적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 34조(보장시설 장의 의무) 및 보건복지부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Ⅵ.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에 의하면 보장기관은 매년 설·추석 전월(연2회)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전월 20일부터 설날·추석의 전일까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 개인별로 직접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수급자가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설날·추석 전에 퇴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보장시설수급자에게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설날·추석 전에 퇴소하여도 반납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2017년에 5명에게 기지급한 특별위로금 179천원을 퇴소를 이유로 반납 받는 등 특별위로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특별위로금 반납 부적정 내역】

연번	입소시설	이름	생년월일	퇴소일자	퇴소사유	반납한 특별위로금
1	*******요양원			2017. 1.12.	보호자인도	35,800
2	*******요양원			2017. 1.16.	사망	35,800
3	*******			2017. 1.15.	사망	35,800
4	*******케어센터			2017. 3.21.	병원입원	35,800
5	*******요양원			2017. 9.20.	사망	35,800
합 계						179,000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추후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1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28.	시정	환급	1,601	-	-

제 목	보장시설수급자 시설생계비 입원공제 부적정

【 지적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 34조(보장시설 장의 의무) 및 보건복지부 지침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Ⅵ.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질의응답집」에 의하면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신발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지만 일반수급자로 보장 당시 장기입원으로 인한 공제금액은, 동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이후 장기입원 사실이 통보되더라도 보장시설 생계급여에서는 차감하지 않고 상기 수급자의 장기입원에 따라 입원기간 중 초과 지급된 생계급여액은 수급자가 직접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일반수급자로 보장당시 장기입원으로 인한 공제금액이 보장시설에 입소한 이후 통보되더라도 시설생계급여에서 입원공제금액을 차감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8년 ~ 2019년 시설생계비를 지급하면서 16건 1,601천원의 입원공제 금액을 시설장이 지급 받는 보장시설 생계급여에서 차감 공제하여 시설생계비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세부내역별첨)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부당하게 차감 공제된 시설생계비에 대하여 추가 환급 조치하고, 일반수급자로 보장 당시 장기입원으로 인한 공제금액이 발생 시 초과 지급된 생계급여액이 환수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로 통보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1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28.	주의	-	-	-	-

제 목	보장시설수급자 월동대책비 사용 부적정

【 지적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34조(보장시설 장의 의무) 및 보건복지부 지침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Ⅵ.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에 의하면 보장기관은 보장시설 수급자 월동대책비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10월(연1회)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월동대책비는 보장시설 수급자가 겨울을 대비한 월동용품 구입, 즉 내복·담요·양말구입, 난방비 등 월동준비에 필요한 항목에 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보장기관에 별도로 지원되는 월동대책비가 지급목적에 따라 주·부식비 목적이 아닌 겨울을 대비한 월동준비에 필요한 항목에 준하여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지도·감독하였어야 함에도 2017년 ~ 2018년 12개 시설에서 807천원의 월동대책비를 주 ·부식비로 사용하게 하는 등 시설수급자 급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내역별첨)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시설생계비 정산보고 시 월동대책비가 지급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추후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2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28.	주의	-	-	-	-

제 목	공사계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 지적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서는 건설업 도급계약 체결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발주 시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했으나, '어르신복지과 종합감사' 기간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 4건의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공사계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내역

연 번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금액(천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여부	비 고
1	구립**경로당 시설개선공사(건축)	'18.03.21.	53,400	미계상	4천만원 이상
2	구립***동경로당 시설개선공사(건축)	'18.05.23.	54,300	미계상	4천만원 이상
3	********지회 방수 및 시설보수공사	'18.04.09.	42,100	미계상	4천만원 이상
4	구립*********센터 환경개선 공사	'18.10.29.	53,200	미계상	4천만원 이상
합 계			203,000		

【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체결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추후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2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어르신복지과	2019.10.28.	주의	-	-	-	-

제 목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부적정 계약

【 지적내용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및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건설공사의 계약은 해당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 발주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공사업종을 확인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관련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3개 업체와 총 79,650천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 부적정 계약 내역

연번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천원)	업 체 명	업종	적정업종
1	대림*****센터 우리동네 세대공존 조성공사	’19.4.3.	18,500		미등록업체	실내건축공사업
2	**경로당 환경 개선 공사	’18.12.5.	19,050		창호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3	**********지회 방수 및 시설보수공사	’18.4.9.	42,100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합 계			79,650			

【 조치할 사항 】: 어르신복지과장은

○ 공사계약 체결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추후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